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

수신 관내 장년근로시간단축 사업장 귀하

(경유)

제목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폐지 및 유의사항 안내

1. 관련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0296호, '19.12.31, 일부개정]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개정[고용노동부령 제276호, '19.12.31, 일부개정]

2.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이 '20.1.1자로 폐지, 해당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의 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의3(근로시간 단축 지원금의 신청)이 개정(삭제)되었습니다.

3. 아울러, 제도 폐지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과규정(부칙 제3조)을 두어 '19년 말까지 종전 제28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고 '20년 1월31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2년간 지원토록 하였으므로

- 장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 사업장의 해당 근로자와 사업주는 반드시 '20.1.31까지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구지방고용노동청대구서부지청장



주무관

권유석

팀장

도세환

소장

전결 2020. 1. 16.

한병일

협조자

시행 대구달성고용센터-141 (2020. 1. 16.) 접수

우 42984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중앙로34길 1 (논공읍, 달성산업단지관리공단) / www.moel.go.kr

전화번호 053-605-9518 팩스번호 0505-130-3009 / oilstone@korea.kr / 대국민 공개